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## 1. 주요 내용

- 가. 고용노동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,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.
- 나.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,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였습니다.
- 다. 고용노동부 소속기관(지방고용노동관서)에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(6급 1명, 7급 8명, 8급 8명)을 증원하였습니다.
- 라.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및 산업재해 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3명(6급 123명, 7급 208명, 8급 82명),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(7급 10명, 8급 15명, 9급 15명)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.
- 마.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\(2019. 4. 16. 시행\)](#)